

# 대구예술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규정

(제정 2014.02.04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19.06.20. 교무위원회/자구수정)

(개정 2024.03.25. 교무위원회)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기능)** 본 센터는 교수자의 효과적인 교수법 개선과 교수 및 학생 간 교육 환경 확대 및 상호작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교수법 개선 연수 지원, 교수법 특강·워크숍, 강의촬영·수업분석 및 상담, 신임교수 오리엔테이션 등의 사업을 수행 한다
2. 학습지원, 수업능력 개발 지원, 학습기술 워크숍, 학습관련 강연회, 토론회, 심포지움 등의 행사를 수행 한다
3. 교육관련 정보제공 및 자료 대여, 교육기자재 대여, 자료변환, 교육매체제작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한다.
4. 인터넷 강의를 위한 업무를 수행 한다.
5. 수업동영상 촬영을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여 교내·외 구성원과 교수학습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한다.
6.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

**제3조 (조직)** 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센터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2.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하부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4조 (센터장)** ① 센터장은 우리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7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(2024.03.25.)

②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의 업무전반을 총괄한다.

**제5조 (연구원)** ① 센터에 전임연구원 및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② 전임연구원 및 특별연구원은 학사학위 취득 이상인 자로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6조 (연구조교 및 사무직원)** ① 센터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조교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사무직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하며 조교는 총장이 임용한다.

**제7조 (운영위원회)** 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**제8조 (위원회 구성)**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**제9조 (심의사항)**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규정의 제정 및 개폐
2. 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
3. 센터의 각 사업에 대한 운영 방침
4. 센터의 예산 및 결산
5.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10조 (위원회 회의)** 위원회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,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가부동수 일 때는 센터장이 결정한다.

**제11조 (재정 및 회계)** 센터의 재정 및 회계는 우리 대학교 규정에 따른다.

**제12조 (보칙)**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#### **부 칙**

제1조 (시행일) 이 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**부 칙**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**부 칙 (2024.03.25.)**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